

주민청구 조례안

(1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32	거창군 농민수당지급 조례안	1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020-3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인에게 대가를 정책적으로 지원
(2019. 7. 25. 주민조례제정청구)

2. 주요내용

가.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지급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라. 지급신청, 절차, 지원제외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 조치 : 예산 확보 예정

다. 기타 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주민조례청구 절차 : 붙임 1
- 3) 비용추계서 : 붙임 2
- 4) 타시군 사례 : 붙임 3
- 5) 의견 : 붙임 4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 생태계 보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3.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 분야 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제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 ④ 군수는 읍장·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읍장·면장에게 이를 알린다.
- 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군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 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1.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2.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3.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4.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 외로 전출 등 실제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 2. 수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된 농민수당을 지체 없이 돌려받아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지원제외자에게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지급 대상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월 100천원 지급시	농민	219	219	219	219	219	1,095
	농가	142	142	142	142	142	710
월 50천원 지급시	농민	110	110	110	110	110	550
	농가	71	71	71	71	71	35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월 10만원 지급 경우

- 농민 : $18,264\text{호}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21,916,800,000\text{원}$
- 농가 : $11,804\text{호}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4,164,800,000\text{원}$

월 5만원 지급 경우

- 농민 : $18,264\text{호}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0,958,400,000\text{원}$
- 농가 : $11,804\text{호}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7,082,400,000\text{원}$

※ 2019. 12월말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수

작성자 :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붙임 2>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청구에 대한 의견서

-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전국 17개 지자체의 지급 방법은 농가 단위로 연 50~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우리군도 농가 단위로 연 60만원의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문 의견(안)>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제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